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결과 보고

의안 번호	제415호
의결 년월일	2009. 5. 12. (제152회)

제출년월일 : 2009. 5.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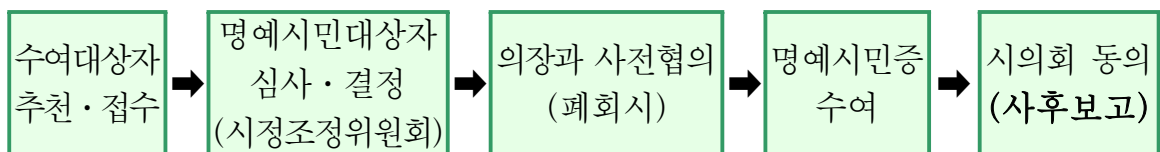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부천시와 국제교류 우호도시인 중국 웨이하이의 “손술도(孙述涛)” 시장에게 2009. 5. 1. 제25회 복사골예술제 개막식에서 부천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였기에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제3조’에 의거 보고합니다.

□ 수여 근거 :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 제3조(수여결정)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의회가 폐회중인 때에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하고 수여 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한다.

○ 수여절차



□ 명예시민증 수여 결과

- 수여자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출생년도	비 고
중국 웨이하이시	시 장	손술도 (孫述濤)	1965 (44세)	

- 수여 일시 및 장소 : '09. 5. 1(금), 복사골예술제 개막식

□ 수여자 공적사항 및 수여 배경

- 중국 웨이하이시는 2000. 1. 7. 부천시와 경제·문화우호교류 협력을 체결하고 청소년 홈스테이, 문화예술단 상호 방문공연, 민간 단체 간 교류, 현지 교민과 투자기업인을 위한 행정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협력과 우호교류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도시이며
- 한국 교민이 4만명 이상 거주하며 한국투자 기업이 2,400여개에 달하여 웨이하이시 전체 세수의 60%를 이들 기업이 납부하고 있음.
- 이러한 두 도시 간 국제교류 협력사업 활성화는 웨이하이시 “손술도(孫述濤)”시장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가 있어 가능하였으며,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므로 향후 두 도시 간 신뢰와 우의 증진에 지속적인 후원자가 되도록 하고자 함.

□ 사전협의 경과

- 중국 웨이하이시장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계획 수립 : '09. 4. 14.
- 제 6회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원안의결) : '09. 4. 20.
- 중국 웨이하이시 손술도 시장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에 대해 부천시의회 사전 보고 및 협의의견서 제출 : '09. 4. 22.


- 사전 협의결과 회신 (협의사항에 대해 원안과 같이 협의함) : '09. 4. 29.

□ 참고 사항

-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 추천서 : 별지 1
-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현황 : 별지 2
-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 별지 3

【별지 1】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 추천서

	성 명	손술도(孫述濤)	
	생 년 월 일	1965년 1월생(44세, 남)	
	국 적 (출 생 지)	중국 (산동 고밀인)	
	직업(직위)	공무원(웨이하이시장)	
주소 및 연락처	사무실	주 소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세창대도 45호
		전 화	0631-528-6970
학 력 및 주 요 경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동농업대학 임학과 졸업(1983년) / 농학박사 ○ 산동농업대학 임학원 원장(1997년) ○ 가택시 부시장(2001년) ○ 산둥성 조직부 부부장, 겸)성간부학원 원장 (2007년) ○ 웨이하이시위원회 부서기, 겸) 웨이하이시장 대행(2008년) ○ 웨이하이시위원회 부서기, 겸) 웨이하이시장(2008년) 		
공 적 요 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천시와 웨이하이시 간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 10명~15명 / 년 ○ 문화예술단 상호방문 교류 : 25명 / 년 ○ 청년회의소(JCI)간 상호방문 교류 : 15명~20명 / 격년제 ○ 공무원 상호파견 교류 : 1명 / 년 ○ 중국 웨이하이시 한인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과 공안국, 외국지원센터에 조선족을 배치하여 통역 자원봉사 · 웨이하이시정부와 한인회 간부와의 정례적인 간담회 개최 : 4회 / 년 · 웨이하이시 한인회에서 한국인 유학생 등 비자발급 대행창구 승인 ○ 웨이하이시 한국인 학교 설립 지원 		

[추천인] 소속 : 부천시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직위 : 회장 성명 : 이형재

부천시장 귀하

【별지 2】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현황

2009. 5. 1 현재

연번	수여일	대 상 자			공 적 사 항	추천자
		성 명	직 위	국적		
계		29명				
1	'81. 9.29	잭.비.화이트	벌드윈파크시 시장	미국	자매결연 유공	시 장
2	'88. 3.18	빌제이 듀크스	디케터시 시장	미국	자매결연 추진유공	상공회의소 회장
3	"	래리 베니치	모간군위원회 회장	미국	"	"
4	"	레이 캠벨	알라바마주 상원의원	"	"	"
5	"	존디 룡	하드셀레시 시장	"	"	"
6	"	토마스라이드	디케터 일간지 주필	"	"	"
7	"	바이론 벨슨	디케터시 교육장	"	"	"
8	"	얼 모리스	모간군 산업개발협회 부이사	"	"	"
9	"	어빈 컴맨더	디케터 상공회의소 전무이사	"	"	"
10	"	에릭 헨콕	디케터우송국 시장조사부사장	"	"	"
11	"	제임스 그레이	그레이전화공급사 사장	"	"	"
12	"	후레드 덴톤	알라바마주정부 국력개발협력이사	"	"	"
13	'88. 4.14	커크폰드	페어차일드코리아 반도체(주) 회장	미국	외자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14	'02.10. 1	손성목	부천에디슨 과학박물관장	한국 (강릉)	부천에디슨 과학 박물관 개관유공	시 장

연번	수여일	대 상 자			공 적 사 항	추천자
		성 명	직 위	국적		
15	"	북전영자	셀라뮤즈 자기박물관장	한국 (서울)	문화예술 발전 유공 (161종 850점, 50억원상당 기탁)	시 장
16	"	임헌정	부천시립예술단예술 감독,부천필상임지휘자	한국 (서울)	문화예술 발전 유공	"
17	'03. 5. 3	하기와라 세이지	오카야마시 시장	일본	국제교류협력 및 우호증진 유공	시 장
18	"	알렉산더 소콜로프,	하바로프스크시 시장	러시아	"	"
19	"	김창남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오카야마현지방본부단장	일본	"	"
20	'03.10. 1	이장호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초대집행위원장 현 전주대학교 교수	서울	문화예술 발전 유공	"
21	'04. 5. 1	미야카와 히요시	일반 오카야마시의원 일한의원연맹회장	일본	시민교류 증진 유공	한일친선협회 추천
22	'05. 8.19	석충신	하얼빈시장	중국	국제교류 증진 기여	시 장
23	'07. 5. 1	하비 홀	베이커스필드시장	미국	국제교류 증진 기여	시 장
24	'07. 8.29	두우신	하얼빈시위원회 서기	중국	국제교류 증진 기여	시 장
25	'07.10. 1	박영관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이사장	한국	국제교류 증진 기여	시 장
26	'08. 5. 1	프랭크 트리피키오	미국 베이커스필드시 자매도시협의회 前 회장	미국	국제교류 증진 기여	국제교류 협의회회장
27	'09. 5. 1	다카야 시게오	일본 오카야마시장	일본	국제교류 증진 기여	가와사키시 난무지부 민단장
28	"	쉐린 가찰리안	필리핀 발렌수엘라시장	필리핀	국제교류 증진 기여	세계한인 무역인협회장
29	"	손술도	중국 웨이하이시장	중국	국제교류 증진 기여	국제교류 협의회장

【별지 3】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제정	1984. 02. 13 조례 제618호
개정	1993. 08. 09 조례 제1236호
개정	1999. 07. 29 조례 제1681호
전문개정	2002. 11. 11 조례 제1898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및 재외동포 또는 타시군 인사에게 수여하는 부천시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여대상) ①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대상은 외국인 및 재외동포 또는 타시군 인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내외적으로 부천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정에 적극 협력한 자
2. 사회, 경제, 문화, 예술등 각 분야에서 시민의 생활증진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3. 자원봉사등 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 및 시민화합에 기여한 자
4. 지역개발을 위한 직·간접투자와 국내외 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한 자
5. 기타 시정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를 방문하는 국내외 인사중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수여결정)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의회가 폐회중인 때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하고 수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4조 (수여방법) ① 외국인과 재외동포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 타시군 인사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다.

②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5조 (수여자의 권리등) ① 이 조례에 의한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다.

②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하여야 한다.

제6조 (취소)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 시민증서를 받은 자가 그 수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기록유지) 시장은 명예시민증서의 수여 및 회수상황을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03.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